

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주차 단속 민원처리 문의 통보(하달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

- 관련문서 :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- 35632('11. 8. 30)

2. 문의사항

-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주차 단속을 요구할 경우
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한지

- 부설주차장 앞 주차장 이용불가로 주차단속 요구하는 경우

- 대문 등 주출입구 진입을 어렵게 하여 주차단속 요구하는 경우

- 도로폭이 4m미만인 경우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단속 요구하는 경우

3. 검토의견

가. 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

나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별표6) 노면표시 515호, 516호 주차금지표시

다. 검토결과

- 도로교통법상 주·정차 금지장소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장소(교차로, 횡단보도,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등)가 있고

- 시행규칙 별표(6), 노면표시로 황색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장소가 있음

- 따라서 위의 장소에서는 주·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이나 이외의 장소

예컨대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에는 해당하나 안전표지나 노면표지가 없는 이면

골목길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사료됨

- 다만, 관계공무원이 주차위반에 대한 이동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시는 도로교통법 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에 의거 적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. 끝.

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

수신자 관악구청장(교통행정과장), 교통지도과장, 서울관악경찰서장(경비교통과장), 생활안전과장

경위 경감 경정

협조자

시행 교통안전과-12091 (2011.09.15.) 접수 교통지도과-25803 (2011.09.15.)

우 110798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/ <http://www.smpa.go.kr>

전화 02-700-5021(502 /전송 733-8959 / sagoq@police.go.kr / 부분공개 1.)